

“일터가 위험하면 ‘진짜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 필요” 민주노총, 산안법 개정 발의

조연주 기자 | 승인 2025.07.10 17:06

“일터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 실질적으로 보장 받아야”
특수고용·플랫폼·하청 노동자에도 사각지대 없는 작업중지권 보장
“정수기 점검 노동자엔 얼음물도 아까운 정수기 회사” 황당 사례도



‘위험하면 멈춰!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정혜경 의원실 제공)

노동현장에서 각종 위험 상황이 발생할 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발의된다. 명시적인 작업중지권을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과 손실 보전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위험하면 멈춰!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 법은 작업중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산안법 개정안에는 ▲노조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작업중지 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작업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유해 위험이 개선되기 전에는 작업 재개를 하지 못하는 등 중지 명령을 실질화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해 폭염·폭우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감정노동 등으로 작업중지권을 확대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작업중지 기간 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 보전도 법제화하고,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느낀 누구나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 현장의 위험은 그 작업을 직접 해 온 노동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베테랑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증언한 사례들을 보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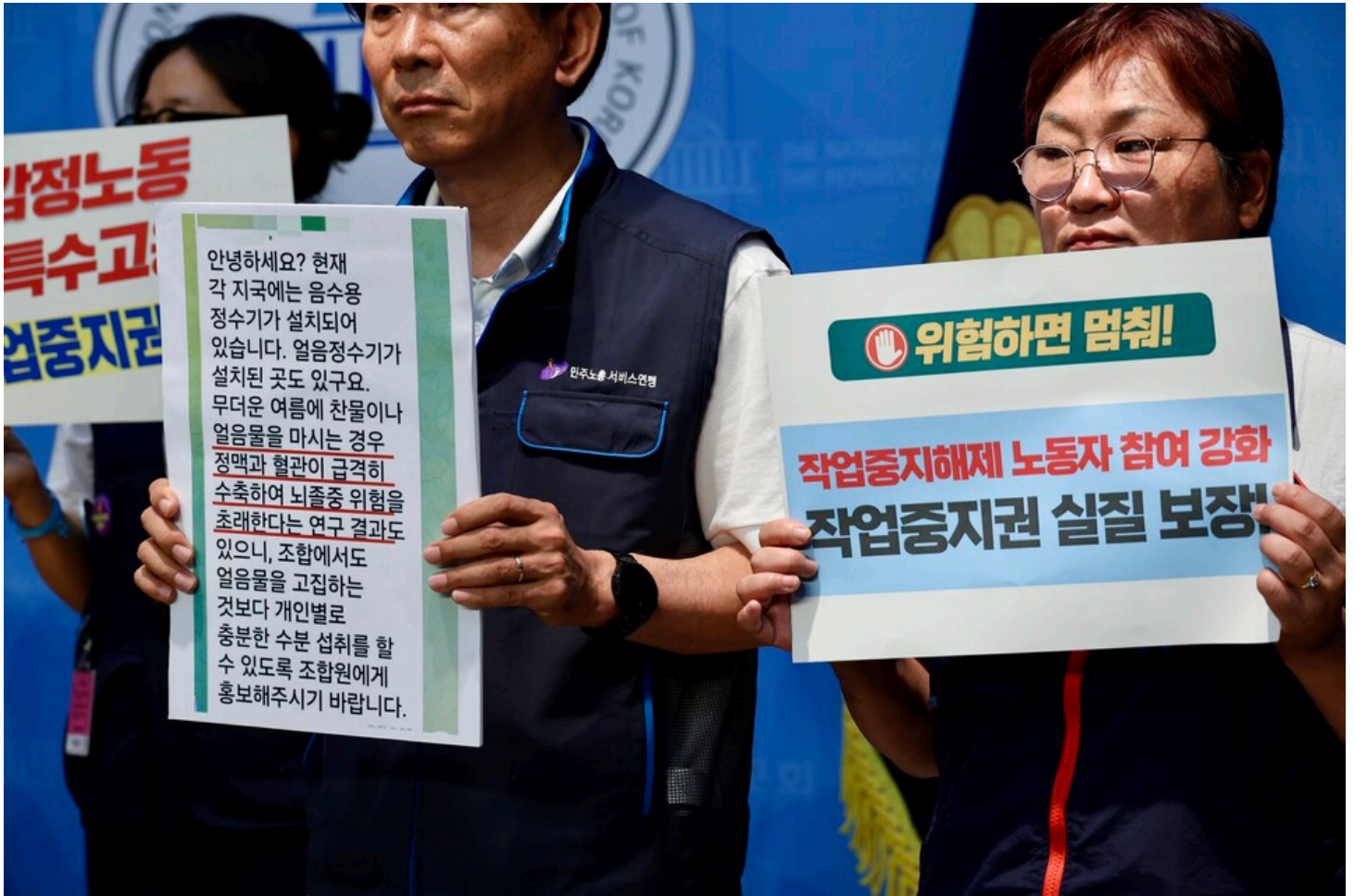


'위험하면 멈춰!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정혜경 의원실 제공)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노동현장의 사례가 이어졌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디지털 공장인 앱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휴식을 취하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의 폭염 가이드라인을 공지하지만 플랫폼은 '지금이야말로 돈을 벌 때'라며 수수료를 높인다"고 전했다.

이어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쾌적한 날씨에 일하면서 손가락을 빨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 것이다. 위험한 일자리라도 견디며 돈을 벌거나,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하고 소득을 포기하거나 해야 한다. 위험한 일터라는 선택지를 없애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와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노동자를 최악의 밸런스 게임 속에 몰아넣고, 그것을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라고 몰아붙여선 안 된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노동조합 지회장이 위험을 인식하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사측이 징계한 사건을 법원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를 언급하면서 "법원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업장의 규모,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을 증명시켜줬다"면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거부할 용기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고, 기업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하면 멈춰!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정혜경 의원실 제공)

더해 "금속노조는 올해 모든 사업장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통일 요구를 '작업중지권 확보' 단 하나로 압축했다. 온전한 작업중지권 쟁취 없이 교섭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서라도 반드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대공장이나 건설현장은 소위 위험 산업으로 사회적인 인지가 퍼져 있는데에 비해 (이동) 서비스 노동현장의 위험 작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백화점·면세점·마트와 같은 판매서비스 노동자가 아직도 가장 힘든 업무로 꼽는 것은 소위 '진상 고객' 응대다. 가전 점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칼을 들이미는 물리적 폭력이나 성적 언동을 하는 고객 집 방문을 거부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정수기 방문 점검 노동자가 시원한 얼음물 지급을 요청하자 사측이 '너무 더울 때 얼음물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며 거절한 사례를 들면서는 "특고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폭염 속의 노동자가 절박하게 요청하는 내용도 궤변으로 뭉개는 이같은 일이 많아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